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제도개편〉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93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핵기업의 선정과 지원	2
2.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관련	8
3.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	30
4. 소재 · 부품 · 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 선정	41
5.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직업교육훈련과정	44
6. 자구수정	4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Ⅲ. 검토의견

1. 중핵기업의 선정과 지원

(안 제2조제4호의2, 제13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신설>	4의2. “중핵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제13조의2(중핵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중핵기

현행	개정안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u>특화선도기업</u>,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u>제13조</u>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u>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핵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u>특화선도기업, 중핵기업,</u>-----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 ----- ----- -----<u>제13조, 제13조의2</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특화 제조기업을 각각 특화선도기업과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¹⁾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²⁾,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을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으로 지정하여³⁾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1> 현행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기준·요건

지정권자	구분 (근거규정)	성격	지원내용 (근거규정)
산업통상부 장관	특화선도기업 (법률 제13조)	소재·부품·장비 관련 <u>핵심전략기술</u> <u>보유기업</u>	전략수립지원 등 행정적·기술적 ·재정적 지원 (법률 제16조)
	전문기업 (법률 제14조)	소재·부품·장비 <u>특화 제조기업</u>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소기업 (법률 제15조)	소재·부품·장비 <u>특화 중소기업</u>	
	창업기업 (법률 제15조)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 <u>중소기업</u>	

개정안은 핵심기술 보유 여부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하여 중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지정하여⁴⁾ 특화선도기업 등에 준하는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⁵⁾를 고려할 때 핵심전략기술 보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중핵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업과 특화 중견·중소기업 외에 관련 생태계 구축과 공급망 안정에 중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중핵기업의 범위와 요건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과 전문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과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등을 선정요건으로 명시하고⁶⁾ 있는 반면에,

개정안에 따른 중핵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 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⁷⁾ 중핵기업의 범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의2(중핵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위와 요건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중핵기업의 범위와 요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추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 현행법 및 동 개정안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기준·요건

구분 (근거규정)	성격	선정기준 또는 요건
특화선도기업 (법률 제13조)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 갖춘 기업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전문연구개발인력 보유 현황
전문기업 (법률 제14조)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 5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자기계열회사 매출비중 50% 미만
중핵기업 (개정안 제13조의2)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관련

가. 특화단지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45조제1항)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특화단지의 의미를 분명히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생략) 1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서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u>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u>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 ----- ----- ----- ----- ----- -----특화단지를----- -----.

현행법상 “소재·부품”, “장비”와 “핵심전략기술” 등 동 법률 중 사용되는 주요용어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나⁸⁾,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내용규정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칭하고 있음⁹⁾.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1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의규정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화단지”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임¹⁰⁾.

현행법상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별도의 장¹¹⁾을 두고 있는 등 “특화단지”가 가지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의규정에서 “특화단지”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1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서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하게 하는 등 특화단지의 지정절차를 개편함.

현행	개정안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신설>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3년 또는 5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현행	개정안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u>지정</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⑤ ----- ----- <u>지정과 유효기간 연장</u> <u>등에</u> ----- ----.

현행법상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하고¹²⁾,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특화단지 지정이 관련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지정신청절차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한 점,

1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¹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¹⁵⁾ 등 유사입법례에서 신청권자에 대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특화단지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¹⁶⁾.

개정안은 특화단지 지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한편 경쟁력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함¹⁷⁾.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특화단지 지정시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부분의 경우, 특화단지 지정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는 경쟁력위원회 심의사항¹⁸⁾에 준하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¹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²⁰⁾ 등 유사입법례에서 지역 지정시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산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설치 및 운영)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생략)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생략)

2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생략)
2. 특화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생략)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협의절차 부분의 경우, 현행법상 처분기관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게 하던 것이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심의기관인 경쟁력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절차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함.

<표 3> 특화단지 지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절차참여

구분	현행법	개정안
행위 주체	산업통상부장관 (처분기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기관)
행위 유형	협의	의견청취
절차 성격	의무절차	임의절차

특화단지 지정이 기반시설의 수요·공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의 절차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²¹⁾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게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년 또는 5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²²⁾.

이는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나 특화단지 지정이 계속되어 특화단지 지정의 형식과 지원사업의 실질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특화단지 지정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2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③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3년 또는 5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화단지 지정시 유효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경우 특화단지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장기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특구와 클러스터 등 지정시 유효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정시에는 발전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등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시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게 하고,

연장시에는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3년 또는 5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하여 신규지정시와 연장시 유효기간 설정방식을 범위와 단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특화단지의 신규지정시와 연장시 유효기간 설정방식을 달리 규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3년 내지 5년을 지원기간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²³⁾ 특화단지 신규지정시 발전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에 각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²⁴⁾을 고려할 때,

23)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6-30년)」, '25.10.

24) 산업통상부 설명자료, 2026.2.

신규지정시에는 5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게 하고 연장시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4> 특화단지 지정 및 연장시 유효기간 비교

구분	개정안	수정의견	비고
지정시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5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사업기간 3년 내지 5년 + 준비기간 2년
연장시	3년 또는 5년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사업기간 3년 내지 5년

또한 개정안 제45조제3항은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여²⁵⁾ 유효기간의 결정권자가 불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문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③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3년 또는 5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²⁶⁾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²⁷⁾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화단지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 사항은 특화단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에 상당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화단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46조(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안 제46조)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외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에 대해 새로이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신 설> 2. 3. (생략) 4. 관련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u> <신 설>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 -----<u>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u>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의2. 제4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3. (현행과 같음) 4. -----<u>시·도지사가</u>-----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신설>	의 변경을 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핵기업을 추가·삭제하는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2. 특화단지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특정 특화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관련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²⁸⁾.

2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외에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또는 해제사유로 현행법상의 사유 외에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를 추가함.

특화단지의 위치와 면적, 특화업종 등 특화단지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정내용에 해당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투자지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입법례 중 상당수에서 지정해제 외에 지정변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점²⁹⁾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해제권 외에 지정변경권을 부여하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①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②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④ 관련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⑤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표 5> 특화단지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유

사유	현행법	개정안
① 지정요건 미달 ②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③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 ④ 관련 시·도지사의 요청	지정해제	지정변경 / 지정해제
⑤ 특화단지 지정 유효기간 만료	-	

특화단지의 지정변경은 특화단지 운영부실 등에 따른 제재적 취지의 처분이 아니라, 특화단지의 위치와 면적, 특화업종 등 특화단지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특화단지 지정 및 관련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

①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②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성격상 사안에 따라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서 지정변경을 할 사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

⑤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화단지 지정은 당연 해제되는 것으로³⁰⁾ 별도의 지정해제를 하거나 지정변경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정변경과 지정해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기간만료 시 당연히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만료를 지정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라. 특화단지발전계획과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

(안 제47조의2 신설)

개정안은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또는 5년 단위의 특화단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매년 특화단지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47조의2(특화단지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또는 5년 단위의 특화단지 발전계획(이하 “특화단지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u>② 특화단지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특화단지의 발전목표</u> <u>2. 특화단지의 현황과 여건 분석</u> <u>3.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특화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시·도지사는 특화단지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특화단지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특화단지발전시행계</u>

현행	개정안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특화단지발전계획 및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화단지발전계획, 전년도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특화단지발전계획 및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상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등 목적달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³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³²⁾.

3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특화단지의 관할 시·도지사가 3년 또는 5년 단위로 특화단지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이에 따라 매년 특화단지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특화단지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 특화단지 소재지 시·도지사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한편 산업단지 등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 관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전국단위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³³⁾,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별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며³⁴⁾,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³⁵⁾,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법률상 각각 소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단일한 기본계획 또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됨.

반면에 개정안의 경우 특화단지 관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지사가 개별 특화단지에 대해 3년 또는 5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시 매년 특화단지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여, 법률상 관리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화단지에 대해 발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음.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 6> 기본계획 등 수립주체와 규정대상

구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국	산업통상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소관 지자체	시·도지사 (지역산업진흥계획)	-
산업 단지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특화단지발전계획) *개정안에 따라 신설
		시·도지사 (특화단지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에 따라 신설

또한 기본계획에 이어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대다수 입법례의 경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를 달리 규정하여 각 계획의 성격과 소관범위를 차별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개별 특화단지에 대한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권한을 중복으로 부여하는 결과 각 계획간에 차별성이 없어지는 한편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

가. 위촉직 위원 추가 (안 제8조제3항제2호 신설)

개정안은 경쟁력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³⁶⁾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④ ~ ⑦ (생략)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② (생략)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36)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경쟁력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³⁷⁾,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관계 중앙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는 한편, 위촉직 위원으로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두고 있음³⁸⁾.

3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산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

이에 따라 경쟁력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위원인 정부위원 11인과 위촉직 위원인 민간위원 14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³⁹⁾.

<표 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구성

구분		직위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부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
위원	당연직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가정보원 원장
	위촉직 (민간위원)	무역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분		직위
위원	위촉직 (민간위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소부장투자기관협회 협회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KAIST 소재부품장비기술자문단장
		서울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자료: 산업통상부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으로 ①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에 ②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중간생산물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 또는 설비에 관한 산업으로서⁴⁰⁾, 충북 청주(이차전지), 경남 창원(정밀기계), 전북 전주(탄소소재) 등 중소규모 산업단지에 분산하여 소재하고 있으며, 공정 및 기술상 지역 주력산업과 전기·수도 등 지역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4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리스트

구분	업종	지역	산업단지
제1기 특화단지 (‘21.2. 지정)	종합반도체	경기 용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차전지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디스플레이	충남 천안·아산	천안 제2, 3, 4 일반산업단지, 아산 스마트밸리, 아산 제1, 2 테크노밸리
	정밀기계	경남 창원	창원국가산단
	탄소소재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제2기 특화단지 (‘23.7. 지정)	반도체 장비	경기 안성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바이오 원부자재	충북 오송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산업단지, 화장품산업단지
	모빌리티 모터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 1, 2차 산단, 대구국가산업단지
	전력 반도체	부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자율주행 부품	광주	진국일반산단, 빛그린 국가산단, 미래차 국가산단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역결합성을 고려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에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유사 입법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⁴¹⁾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⁴²⁾,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⁴³⁾의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에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2)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나. 소속 변경 (안 제8조제1항)

개정안은 경쟁력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대통령 소속</u> 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 ----- ----- <u>재정경제부와</u> <u>산업통상부 공동 소속</u> ----- ----- -----.

이는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서⁴⁴⁾ 실질적으로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경쟁력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려는 취지임.

4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경쟁력위원회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사업법례를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의 경우 소속기관을 대통령⁴⁵⁾ 또는 국무총리로⁴⁶⁾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계 부처 공동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⁴⁷⁾ 또는 실·국장급 공무원⁴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4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반적임.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경쟁력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 공동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관급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정부위원회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쟁력위원회의 실제 운영과 다른 정부위원회 구성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소속 및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9> 정부위원회 소속과 당연직 위원

법률	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
반도체 산업 특별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대통령	장관급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국무총리	장관급
자율운행선박법	자율운행선박 정책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차관급
노후거점 산단법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실국장급
소재 부품 장비 산업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	장관급

-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또한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경쟁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조직 체계에 있어 특정 기관에 공동으로 소속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한 점과 아울러, 공동 부처 소관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의 경우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⁴⁹⁾ 등을 고려하여 부처 공동 운영의 실체에 부합하도록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4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 심의대상 추가 (안 제8조제1항11호의4 신설)

개정안은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과 해제를 명시함.

현행	개정안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생략) 1. ~ 11의3. (생략) <u><신설></u> 12. (생략)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생략) 1. ~ 11의3. (현행과 같음) <u>11의4.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특 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u> 12. (현행과 같음)

이는 개정안 제45조와 제46조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을 경쟁력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반영하는 것임.

다만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특화단지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 사항은 특화단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에 상당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화단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 선정

(안 제38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의2(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 선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제3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2. 제2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상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⁵⁰⁾.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⁵¹⁾이 적용된 제품과 정부가 추진한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사업⁵²⁾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정부가 실시하는 수요창출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동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⁵³⁾이며,

5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8조(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5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

제24조에 의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공동 연구개발사업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 등 수요창출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소재·부품·장비 관련 직업교육훈련과정

(안 제41조제1항)

개정안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와 학부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u>학과 및 학부</u> (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 ----- ----- ----- ----- <u>학과·학부</u> 및 학칙으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 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과정은 학위과정인 계약학과등 과정과 비학위과정인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됨⁵⁴⁾.

현행법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와 학부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위과정 중 학과 및 학부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학위과정 중 학과 및 학부 외 조직에서 실시하는 과정과 비학위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정부가 학위과정으로서 ① 학칙으로 정하는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에서 실시하는 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서 ②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임.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위과정 외에 비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학위과정 외에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비학위과정으로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학위과정 중 학칙으로 정하는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에서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 전통적인 학과나 학부가 아닌 계열·트랙·융합전공 등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더 적합할 수 있는 점,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학과·학부 외에 계열·트랙·융합전공 등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점⁵⁵⁾을 고려할 때 정부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학부 외에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5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단과대학 등)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학위과정은 “계약학과등”으로 지칭하고, 비학위과정은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지칭하여 두 과정을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41조는 본문에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계약학과등”으로 지칭하는 한편 제명을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으로 하여 “계약학과등”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10> 수정의견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41조(<u>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u>)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u>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및 학칙으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u> 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u>계약학과등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지원</u>)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u>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직업교육훈련과정의</u>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6. 자구수정

(안 제13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제1호, 제31조제2항)

개정안은 동 법률 중 일부 중복문언을 삭제하고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u> <u>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u>	2. <u>핵심전략기술과</u> ----- -----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1. -----제5조제4항제1호-----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생략)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② ----- -----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게 하고 있는데⁵⁶⁾,

제1호가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가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으로 규정되어 있어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이 중복으로 규정된 상황임.

5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제13조제1항제2호 중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부분을 삭제하여 중복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함.

다음으로 현행법 제30조제1항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개발·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7128호)에 따라 동 법률 중 공기업 관련 조문이 제5조제3항제1호에서 제5조제4항제1호로 변경되었음⁵⁷⁾.

개정안 제30조제1항제1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기업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다음으로 실증기반 구축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2조제1항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분야 관련 기술의 실증시험과 검증시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하고⁵⁸⁾,

제32조제2항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과 검증시험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음⁵⁹⁾.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31조제2항은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이 실증기반 구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정부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제3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임.

58) 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9) 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표 11>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지원사업 인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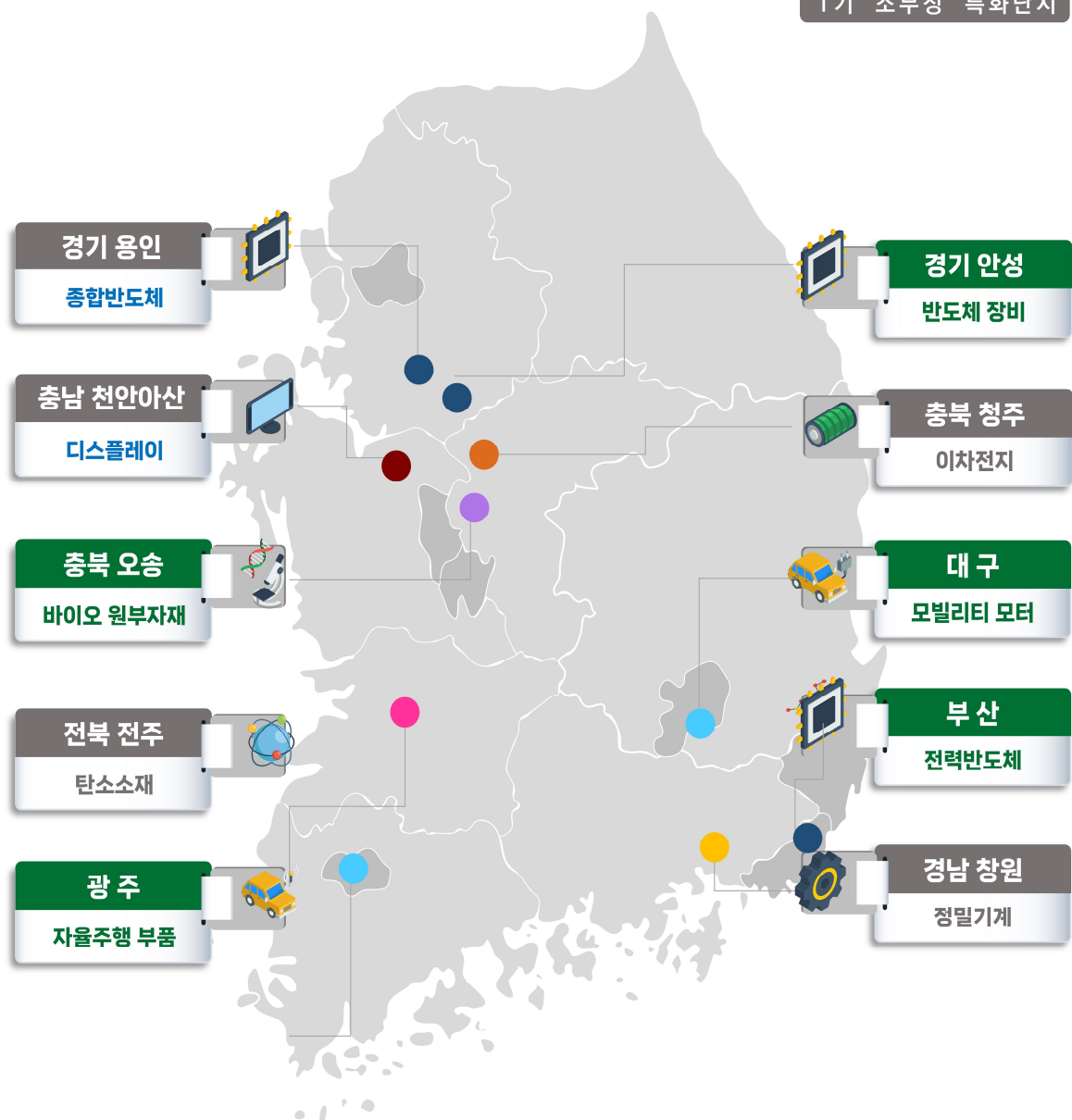
현행법	개정안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시설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u>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시설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u>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u> 할 수 있다.
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u>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u> 할 수 있다.	
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u> <u>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u> <u>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u> <u>4.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31조제2항에 따른 실증기반 구축과 제32조제2항에 따른 실증시험·검증시험 지원은 내용상 서로 구별되고, 제32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제2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소부장 특화단지

2기 소부장 특화단지

1기 소부장 특화단지



● 반도체(4) ● 디스플레이(1) ● 이차전지(4) ● 자동차(2) ● 바이오(1) ● 탄소소재(1) ● 기계(1)

문 의 처
02)6788-5460